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일반사항

이번호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등에 의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고, 다음호부터 10개 제출항목 중 공사개요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 대해 매월 테마로 선정하여 작성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작성 예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도입목적

건설공사 시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추락 · 낙하 · 붕괴 · 감전 등 재해 위험에 대해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한다.

2. 제출대상공사(산안법 시행규칙 제120조)

① **지상높이가 3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 높이까지를 말함. 기타 세부사항은 건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19조 제1항 제5호중 나목은 제외)에서 규정한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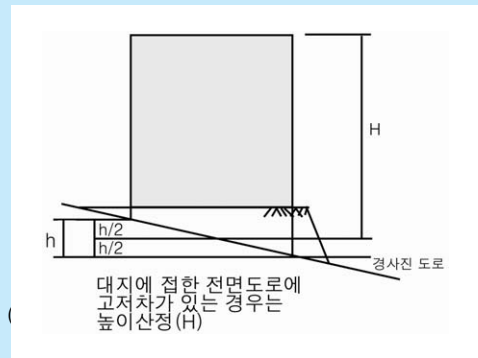
건축물 높이 기준

(건축법 제73조, 동법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기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이때는 수평거리 2m마다 높이 기중 평균한 높이에 대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건설 관련 실무

구분	내용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거한 개선행위 미흡이 인정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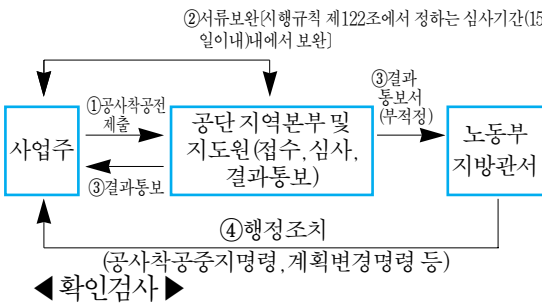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공사착공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라. 확인심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3월에 1회(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사업 중 냉동창고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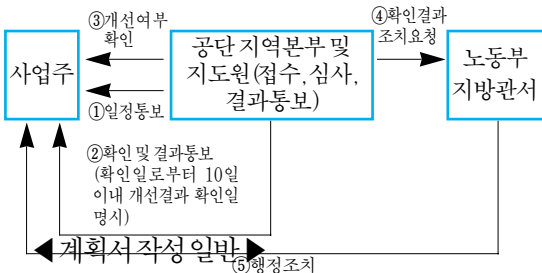
※ 확인 제외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공사 준공시까지

심사 및 확인 절차

◀ 심사 ▶



◀ 확인검사 ▶



-유해·위험방지구획서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유해·위험방지구획서 작성규격은 A4용지 크기로 작성토록 하며, 도면 등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A4용지 크기로 접고 좌측을 묶거나 제본하여 제출한다.

4 자율안전관리제도(S.S.M : Selfcontrol Safety Management)

가. 목적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구획서 심사 및 확인심사를 업체 자율로 수행토록 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공단의 여유인력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한다.

나. 지정기준

공사실적액 순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이 하인 업체로 당해연도 8월 1일부터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지정기간으로 한다.

다. 혜택

자율안전관리업체는 향후 1년간 유해·위험방지구획서 제출·심사가 면제되고, 해당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종류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한다.

※ 관련근거

-산업법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및 제122조 제1항 :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지정하는 건설업체(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은 건설업체 중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당해업체의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이어야 한다.

※ 환산재해율
-사망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5 각국의 사전안전성 심사제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도 사전 안전성 심사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국가	담당기관	내 용
일본	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안전성 평가 • 건설업은 7개 위험공종 대상(안위법 제88조)
대만	노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M(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제도 • 7개 위험공종대상(노동검사법 시행세칙 제26조)
영국	노동성 산하 안전보건청 (H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제도 • 모든 건설공사 대상
미국	노동성 산하 산업안전보건청 (OS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안전 계획서 • 모든 건설공사
IO	IO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 제175호 1988. III 예방 및 보호조치 9A (건설현장에서 예견될 수 있는 모든 위험사항은 사전에 예방조치 되어야 한다)
덴마크	작업환경청 (Working Environment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 법령(작업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사 대상
스웨덴	작업안전보건위원회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 모든 공사
그리스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계획 • 시청 등 허가관청에 제출, 이행여부 확인
중국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심사 ※ 우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제도임

6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제도관련질의 · 회시

가. 부도건설업체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승계

구분	조치
일반건설업체의 부도 발생 경우	일반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의 부도 업체에서 작성한 계획서의 승계를 인정하여 재심사 없이 확인검사만 실시 재해율 우수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심사·확인 검사를 면제 (업체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함)
재해율 우수업체의 부도 발생 경우	재해율 우수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심사·확인 검사를 면제 일반업체가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체 심사 보고서를 인정하여 심사는 면제하고 확인검사만 실시

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1)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유자격자 경력 확인 -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건설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 및 주요경력란의 기재사항을 인정(별도의 경력증명서 등 첨부불필요)

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심사 받은 계획서와 다른 부분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단의 재심사 여부

- 재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서를 보완하여 비치하고 공단에서 확인검사시 적정여부에 대하여 확인

다.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 자율안전관리업체에게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 유자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계획서 작성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유자격자와 자체심사시의 유자격자 겸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가 자체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공단에서 심사 및 확인 가능 여부

- 공단에서 심사 및 확인이 가능

마.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업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기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자율안전관리업체에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 제출기한은 공사착공 전일 까지임

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검토자 자격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산안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관련)

제출항목	제출서류 및 내용
1. 공사개요 다.건설물·공사용기계설비 등의 배치	가.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공사현장의 주변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라.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 관리계획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6호서식)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역 작성 나.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 계획 다.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4. 낙하·비래 예방계획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계획
5. 붕괴방지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또는 가시시설물 계획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 작업계획	가.안전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 검사계획 나.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7. 감전재해 예방계획	고압선 및 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 예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관한 재해예방 계획	영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 방호장치계획 (목공용 등근톱·교류아크 용접기·HardGirder 등)
9.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계획	가.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중에 대한 방호대책 나.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면장등) 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작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라.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바.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가.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 나.위험물질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다.발파작업시 안전계획

※비고 :계획서의 항목중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제출한다.